

의안번호	제 104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4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
----------	-----

제출연월일 : 2007년 4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과 소방관서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629명 ⇒ 2,649명 (증2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71명 ⇒ 1,477명 (+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7명 ⇒ 70명 (+3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 1,047명 ⇒ 1,058명 (+11명)
 -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증감내역 : 일반직 +9명, 소방직 +11명
 - 일반직(+9) : 5급 +4, 6급 +3, 7급 +2
 - 소방직(+11) : 소방위 +1, 소방장 +3, 소방교 +3, 소방사 +4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참고자료 :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629명”을 “2,64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71명”을 “1,477명”으로, 동조 제2호중 “1,047명”을 “1,058명”으로, 동조 제4호중 “67명”을 “70명”으로 한다.

별표 1중 정원의 총수 2,629명을 2,649명(증원 20명)으로 하고, 본청의 정원 980명을 985명(증원 5명)으로, 의회사무처의 정원 67명을 70명(증원 3명)으로, 직속기관의 정원 1,296명을 1,307명(증원 11명)으로, 사업소의 정원 286명을 287명(증원 1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종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정원		2,649	985	70	1,307	287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직	소계	1,085	819	44	67	155
	2-3급	1		1		
	3급	9	7		1	1
	3-4급	1	1			
	4급	60	40	7	5	8
	5급	217	172	10	14	21
	6급	360	277	14	19	50
	7급	379	281	12	24	62
	8급	57	40		4	13
	9급	1	1			
일반 · 정	소계	4	3	1		
	5급	2	1	1		
	6급	1	1			
	7급	1	1			
별정직	소계	18	10	2	5	1
	1급	1	1			
	5급	2	2			
	6급	10	3	1	5	1
	7급	2	2			
	8급	2	1	1		
	9급	1	1			
연구직	소계	140	1		110	29
	연구관	21			18	3
	연구사	119	1		92	26
지도직	소계	25			25	
	지도관	6			6	
	지도사	19			19	
소방직	소계	1,058	59		999	
	소방정	10	2		8	
	소방령	29	10		19	
	소방경	58	4		54	
	소방위	68	6		62	
	소방장	145	11		134	
	소방교	327	24		303	
	소방사	421	2		419	
교원	소계	44			44	
	학장	1			1	
	교수·부교수 · 조교수·전임강사	32			32	
	조교	11			11	
기능직	소계	274	92	23	57	102
	6급	9	6	1	1	1
	7급	30	10	4	4	12
	8급	54	17	1	4	32
	9급	87	23	7	30	27
	10급	94	36	10	18	3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629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71명</u></p> <p>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1,047명</u></p> <p>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67명</u></p>	<p>제2조 (정원의 총수)</p> <p>..... <u>2,649명</u></p> <p>.....</p> <p>1. : <u>1,477명</u></p> <p>2. : <u>1,058명</u></p> <p>3. (현행과 같음)</p> <p>4. : <u>70명</u></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5의2와 같다

③~④ (생략)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 (생략)

[별표 5의2]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0조의3제2항관련)

1. 시·도

지방의원의 정수	전 문 위 원		
	총 정 수	4급	5급 이하
20명 이하	5명 이내	4명	1명
30명 이하	6명 이내	5명	1명
40명 이하	8명 이내	6명	2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6명	4명
60명 이하	12명 이내	7명	5명
80명 이하	15명 이내	7명	8명
100명 이하	17명 이내	8명	9명
110명 이하	20명 이내	10명	10명
111명 이상	21명 이내	11명	10명

비 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군·자치구(생략)

비 용 소 요 추 계 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의 총수 : 2,629명 ⇒ 2,649명(증20명)
 - 일반직(+9) : 5급 +4, 6급 +3, 7급 +2
 - 소방직(+11) : 소방위 +1, 소방장 +3, 소방교 +3, 소방사 +4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1,016,062	
○ 인건비	829,324	
- 기본급	454,629	※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5급(4명) : 18호봉 기준 - 6급(3명) : 18호봉 기준 - 7급(2명) : 15호봉 기준 - 소방위(1명) : 17호봉 기준 - 소방장(3명) : 15호봉 기준 - 소방교(3명) : 12호봉 기준 - 소방사(4명) : 10호봉 기준
- 수 당	166,022	
- 정액급식비	31,200	
- 교통보조비	30,840	
- 명절휴가비	45,460	
- 가계지원비	75,919	
- 연가보상비	25,254	
- 기타직보수		
- 일용인부임		
○ 물건비	71,1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36,66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4,440	
○ 이전경비	115,638	
- 성과상여금	15,151	
- 연금부담금	79,832	
- 국민건강보험금	20,655	
- 연금지급금	-	